



## 수입녹용 특소세 폐지 움직임, 본회 강력 반발

– 재경위, 올해까지 연행대로 유지키로 –

제 243회 정기국회에서 수입산 녹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가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김정보위원장 외 7명으로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 법률안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현행 수입산녹용에 부과되던 7%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본회 임직원은 즉각 재경위 법률안 소위 위원실에 연락을 실시, 수입녹용 특소세 폐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본회는 “내년 4월부터 외산 절편녹용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특소세마저 폐지된다면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양록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농민을 죽이고 수입업자들 배만 불리는 특소세 폐지는 절대 안될 일”이라 항변했다. 또한 “수입녹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양록인들의 강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농림부 축산정책과도 같은 맥락의 이유

로 수입녹용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재경위 법률안 소위는 일단 올해까지는 양록농가의 열악한 경쟁력과 농가의 반발 등을 감안, 수입녹용에 대한 특소세를 현행 7%로 유지키로 하고 내년도 특소세에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때 다시 수입녹용에 대한 특소세 문제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본회 관계자는 “수입녹용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녹용 수입업자들의 로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일단 올해 정기 국회에서 수입녹용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부결돼 다행스러운 일이나 특소세를 내리기 위한 수입업자들의 로비는 계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본회는 내년에 다시 실시될 특소세 법률 개정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재경위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수입녹용 특소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양특

### ※ 특별소비세란?

–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 현재 수입녹용은 7%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산녹용은 본회의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으로 1994년 10%씩 부과되던 특소세가 면제된 바 있다.

현재 수입녹용은 특소세 7%, 관세 20%, 교육세 등 총 44%의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